

서울특별시 빗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가. 의안번호 : 제2952호
- 나. 제 안 자 : 임종국 의원(발의자 15명)
- 다. 제 안 일 : 2025년 8월 11일
- 라. 회 부 일 : 2025년 8월 14일

2. 제안이유

- 민간 소규모 건축물 및 공동주택에 대한 좋은빛위원회 심의 대상을 축소하여 신청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좋은빛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자 함
- 공공기관에서 건설하는 건축물과 공동주택을 심의대상에 추가하여 공공 사업에 대한 빗환경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민간 건축물 및 공동주택의 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을 축소함(안 별표)
- 나. 공공기관에서 건설하는 건축물 및 공동주택을 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에 추가함(안 별표)
- 다. 미디어파사드 콘텐츠는 서면심의하되, 최초 심의 및 필요시 대면심의하

도록 함 (안 별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5. 검토 의견

가. 개요

- 이번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 소규모 건축물·공동주택의 심의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사업의 빛환경 관리를 강화하며 미디어파사드 콘텐츠 심의방식을 정비하기 위해, 현행 조례의 ‘〔별표〕 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 시설(제22조제2항 관련)’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별표] 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 시설(제22조제2항 관련)		[별표] 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 시설(제22조제2항 관련)	
구분	시설규모	구분	시설규모
1. 건축물	공공청사	1. 건축물	공공기관에서 건설하는 건축물 ¹⁾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5층 이상의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연면적 10,000㎡ 이상 또는 11층 이상의 건축물(민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2.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공동주택	공공기관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 6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민간)
3. 구조물	교량, 고가차도, 육교 등 콘크리트구조물 및 강철구조물 등	3. 구조물	교량, 고가차도, 육교 등 콘크리트구조물 및 강철구조물 등
4. 공간조명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등	4. 공간조명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등
5.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및 콘텐츠(신설, 개량 등)	5.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신설, 개량 등) 미디어파사드 콘텐츠 서면심의 (최초 심의 및 필요시 대면심의)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대상 시설 중 ①건축물의 경우 민간은 현행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5층 이상’에서 ‘연면적 10,000㎡ 이상

1)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또는 11층 이상'으로 조정하고 '공공청사'에 한정된 기존 규정을 '공공기관에서 건설하는 건축물' 전반으로 확대하며, ②공동주택은 민간의 경우 '20세대 이상'에서 '60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되 '공공기관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세대수와 관계없이 심의대상으로 하고, ③미디어파사드 콘텐츠는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최초 심의 및 필요시 대면심의로 운영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 내용

“현황 및 문제점”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2조²⁾는 3가지(공간조명·광고조명·장식조명) 조명기구를 규정하고 있고 현행 조례 제22조제1항은 공간조명과 장식조명기구를 신설·개량·증설할 때 조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중 [별표]에서 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좋은빛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2조(조명기구의 범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조명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안전하고 원활한 야간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길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

라.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옥외 공간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옥외광고물(「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의료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교정시설 또는 국방·군사 시설에 설치된 옥외광고물은 제외한다)에 설치되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그 옥외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을 장식할 목적으로 그 외관에 설치되거나 외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인 것

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다. 교량

라. 그 밖에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것

「서울특별시 빗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 제22조(조명계획의 수립 등) ① 제3조제1호 및 제3호의 조명기구를 신설, 개량, 증설하려는 자는 조명기구를 설치하기 전에 법 제15조의 조명기구의 설치·관리기준과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빗방사허용기준 및 제21조의 야간경관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조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조명계획 중 **별표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명기구가 적합하게 설치·관리될 수 있도록 지도 또는 권고할 수 있다.

제3조(조명기구의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명기구에 대해 적용한다.

1. 「**인공조명에 의한 빗공해 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간조명
2. 영 제2조제2호에 따른 광고조명
3. 영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식조명

- 현행 조례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좋은빛위원회³⁾는 현행 조례 제11조 및 제22조에 따라 심의하고, [별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축물, 공동주택, 구조물, 공공조명 및 미디어파사드 등을 심의대상으로 운영해 왔으며, 이를 통해 신축·증축 단계에서부터 빗공해를 예방하고 도시 빗환경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음
- 좋은빛위원회는 최근 3년('22년~'24년)간 연평균 약 30회 개최, 연평균 257건을 심의하였고 이는 매월 2~3회씩 개최하는 것을 감안할 때 1회 평균 약 8.6건의 안건을 처리한 것임. 좋은빛위원회는 과도한 안건 처리로 심도 있는 논의에 한계가 있고 심의 처리기간 지연으로 신청인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한편 운영에도 많은 행정력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조례 개정을 통해 심의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3) 좋은빛위원회 운영개요

- 개최주기 : 매월 2째, 4째주 화요일(14:00), 필요 시 수시개최
- 주요기능 (법 제5조, 영 제5조, 조례 22조)
 - 빗공해 방지·빗환경 관리계획 수립,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변경
 - 공간, 장식 조명기구의 신설·개량·증설에 관한 조명계획 심의 및 자문
- 위원회의 구성(45명, 임기 2년) ※ 25~50명 구성(조례 제12조 제1항)

〈 최근 3년간 심의 운영실적 〉

구 분	개최횟수 (회)	심의건수(건)						
		계	공간조명	건축물	공동주택	구조물	미디어 파사드	기타
계	110	925	221	278	176	108	114	28
'25년(8월)	20	155	22	44	43	18	23	5
'24년	29	233	55	79	36	21	28	14
'23년	32	276	85	66	54	39	26	6
'22년	29	261	59	89	43	30	37	3

“개정안 검토”

(1) 건축물 심의 기준

- '22년부터 '25년 8월까지 건축물 심의는 총 278건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연면적 10,000㎡ 미만 건축물은 94건(약 33%), 10층미만 건축물은 108건(약 38%)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건축물 심의건수 (연면적 기준) 〉

심의건수(건)	계	2,000㎡미만	2,000㎡이상 10,000㎡미만	10,000㎡이상 20,000㎡미만	20,000㎡이상 30,000㎡미만	30,000㎡이상
계	278	15	79	46	25	113
'25년(8월)	44	4	14	3	3	20
'24년	79	5	21	13	11	29
'23년	66	6	19	14	4	23
'22년	89	0	25	16	7	41

〈 건축물 심의 (총수 기준) 〉

심의건수(건)	계	5층미만	5~10층	11~15층	16~20층	21층 이상
계	278	36	72	46	71	53
'25년(8월)	44	2	13	10	11	8
'24년	79	18	13	17	20	11
'23년	66	5	21	7	20	13
'22년	89	11	25	12	20	21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들 건축물을 심의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연평균 약 30% 이상의 건축물 심의가 줄어들어 안전 심의 과부하를 완화하고 민간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음
- 그동안 현행 조례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민간 건축물까지 광범위하게 심의대상에 포함하여 과도한 규제로 작용해 왔다는 점에서, 야간경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대형 건축물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심의 실효성과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현행 조례는 심의대상을 ‘공공청사’로 한정하고 있어,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병원·복지시설·문화시설 등은 심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에서 건설하는 건축물’로 그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서울시 내 공공건축물의 빗환경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공공부문이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2) 공동주택 심의 기준

- ‘22년부터 ’25년 8월까지 공동주택 심의는 총 176건으로, 이 중 6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 88건(50%)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민간 공동주택의 경우 600세대 이상만

을 심의대상으로 한정하여 그동안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심의에 포함되던 규제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세대수와 관계없이 심의대상으로 규정하여 공공부문에 대한 책임성과 모범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부문은 대규모 위주로 관리하면서 공공부문은 공공성 차원에서 엄격히 관리하는 균형적 체계가 마련되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됨

〈 최근 3년간 공동주택 심의 (세대수 기준) 〉

심의건수(건)	계	~399세대	400세대 ~599세대	600세대 ~999세대	1,000세대 ~1,999세대	2,000세대 이상
계	176	73	15	32	26	30
'25년(8월)	43	24	3	4	4	8
'24년	36	9	3	3	6	15
'23년	54	24	2	15	11	2
'22년	43	16	7	10	5	5

(3)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심의 기준

- 최근 3년간 미디어파사드 관련 심의는 총 114건으로, 현재는 신규 설치 및 콘텐츠 변경 시마다 심의를 이행해야 하는 등 신청자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최초 설치 및 주요 변경 시에 한해 대면심의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반복심의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4) 개선방안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 대상이 과도하다는 점과 행정 부담을 이유

로 소규모 건축물·공동주택을 심의에서 제외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단순히 심의 건수를 줄여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것만으로는 ‘빛공해 방지 및 도시빛환경의 종합적 관리’라는 제도의 본래 목적⁴⁾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특히 그동안 심의대상으로 관리되어 온 소규모 건축물·공동주택에서 빛공해 관리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심의대상 축소와 동시에 이번 개정조례 시행과 함께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건축물 및 공동주택에 대하여 심의 체크리스트 및 가이드라인 등 관리수단 마련이 필요하다 판단됨

다. 종합 의견

- 이번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심의대상 규정으로 인해 좋은빛위원회가 과도한 안건을 처리하면서 행정력과 신청인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별표]를 개정하여 소규모 민간 건축물과 공동주택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여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공공기관 건축물과 대규모 민간시설은 심의를 유지·강화하고, 미디어파사드 콘텐츠 심의는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정비함으로써 위원회 심의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 ①건축물 심의대상 시설 규모를 민간 건축물은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5층 이상의 건축물’에서 ‘연면적 10,000㎡ 이상 또는 11층 이상의 건축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최근 3년간 건축물 심의

4)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국민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계를 감안할 때 심의대상 완화 시 약 30%의 안전이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동시에 공공기관 건축물의 범위를 ‘공공청사’에서 ‘공공기관에서 건설하는 건축물’로 확대함으로써 공공건축물의 빛환경 관리와 모범성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음

- ②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전부가 심의대상이었으나, 민간 공동주택의 경우 ‘6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개정하여 불필요한 소규모 규제를 해소하고, 반대로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세대수와 관계없이 심의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민간에는 규제 완화, 공공에는 책임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하겠음
- 또한 ③미디어파사드 심의가 신규 설치나 콘텐츠 변경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신청자에게 과도한 절차 부담을 초래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최초 설치 및 주요 변경 시 대면심의만을 유지하고 그 외에는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한 것은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소규모 민간 건축물과 공동주택이 심의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그동안 좋은빛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소한의 관리가 이루어지던 영역에 제도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 조례개정과 동시에 심의 체크리스트나 가이드라인 등 관리수단 마련이 필요하다 판단됨